

제공일자	2015. 5. 7(목)	담당자	황진태 교수 · 박선영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53-850-6217, 02-3775-9038
			총 3매

제목 : 『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』 세미나 개최

- 황진태(대구대학교) 교수는 건전한 보험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험유통채널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함.
-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는 “보험상품중개업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함.

□ 황진태(대구대학교) 교수는 5월 8일(금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“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”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
- 이번 세미나는 판매채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됨.
- 이날 주제발표자인 황진태 교수는 미성숙한 모집관행의 근본원인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의 난립과 보험회사의 통제권 부재,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 부재라고 지적함.

보험상품중개업 도입을 통한 법적 책임성 강화

- 판매자책임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를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함.

- 새롭게 도입될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지위를 보장받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.

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판매자 책임 강화

-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.
 - 기존 대리점의 경우 대리법리의 특성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상품중개업자는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중개업자가 지게 됨.
- 일반 및 전문보험중개업을 구분하는 대신에 타금융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영을 허용함.
 - 일반보험중개업자의 경우 일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한편 전문보험상품중개업의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개별 보험계약을 중개함.

기존 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

- 보험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모집수수료와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위법행위 규율을 강화함.
 -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하여 요구 시 규제함.
 - 6개월 이내 승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설명을 의무화함.

-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및 고지 수령권에 대해 사전 설명을 명확히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**보험설계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**하도록 의무화함.

□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보험상품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채널 환경 선진화에 기여하기”를 당부하며 “보험상품중개업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중개업자와 기존 대리점 채널 간 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”을 강조함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